

해양조사·정보업 등록변경신고서

※ 바탕색이 어두운 난은 신고인이 적지 않습니다.

접수번호	접수일	처리일	처리기간	4일
신고인	대표자(성명)		사업자등록번호	
	주소		전화번호	
사업내용	상호		등록번호	
	영업장소		등록일	
변경내용	변경사항			
	변경 전			
	변경 후			
사유				

「해양조사와 해양정보 활용에 관한 법률」 제30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4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해양조사·정보업의 등록사항의 변경을 신고합니다.

년 월 일

신고인 (서명 또는 인)

국립해양조사원장 귀하

구분	신고인(대표자) 제출서류	담당 공무원 확인사항	
영업장소, 상호, 성명 또는 대표자 변경의 경우	1. 해양조사·정보업 등록증 및 등록수첩(잃어버린 경우에는 사유서를 제출합니다) 2. 신고인(법인인 경우에는 대표자를 말합니다)의 사진 2매	1. 변경사항이 기재된 사업자등록증 또는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2. 법 제32조에 따른 결격사유	수수료 없음
등록된 시설·장비 변경의 경우	1. 변경된 시설·장비의 명세서 및 관련 사진 2. 변경된 시설·장비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3. 변경된 시설·장비의 성능검사서 사본	없음	
기술인력 변경의 경우	1. 입사하거나 퇴사한 기술인력의 명단 2. 입사한 기술인력의 해양조사기술자 경력증명서(해양정보서비스업의 경우에는 교육훈련 수료증을 제출합니다)	없음	

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

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「전자정부법」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. ※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고인이 직접 사업자등록증 사본을 제출해야 합니다.

신고인(대표자) (서명 또는 인)

